

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운영규정- 동호실버재가복지센터

제51조 [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]

- ① 이용계약은 장기요양등급인정 대상자로 본 센터 이용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, 기관의 직원이 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한 “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” 양식을 사용하되 세부내용이 기관의 상황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으나 항목 전체를 삭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계약서의 항목에는 계약당사자, 목적, 계약기간, 급여범위, 급여이용 및 제공, 계약자 의무, 계약해지 요건, 계약의 해지, 이용료 납부, 재계약, 건강관리, 위급시 조치, 개인정보 보호의무, 기록 및 공개, 배상책임, 기타, 계약일자, 계약당사자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.

제52조 [서비스 계약 목적]

서비스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개시 전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고지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간의 분쟁이 없도록 하며 상호간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함이다.

제53조 [서비스 계약자]

계약은 서비스 대상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상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,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.

제54조 [서비스 계약기간]

1.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 단, 대상자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.
2. 계약기간 중 대상자의 인정등급 변동 시 변동일로부터 계약서를 재작성하며, 등급 한도변경, 수가변동 등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고시변동으로 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등으로 인한 고지와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.

제55조 [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]

1. 이용료의 기준은 [별표2]와 같이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 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.
2.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(15%) 본인부담으로 한다. 단,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.
3.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(7.5%),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(0%)이다.
4.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,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.
5. 각 등급별 한도액에 초과되는 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초과되는 금액만큼은 전액 본인부담 하여야 한다.
6.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의 발생하는 모든 비용(병의원, 이미용, 식재료비 등)은 전액 본인부담 하여야 한다.

제56조 [계약자, 당사자의 의무]

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.

1. 서비스제공자(이하 “갑”이라 칭함)의 의무
 - ① 서비스이용자(이하 “을”이라 칭함)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
 - ② “을”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 -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2. 서비스이용자 의무
 -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
 -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 - ③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
3. 보호자(이하 “병”이라 칭함)의 의무
 -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
 -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
 -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 -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

-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 · 퇴소 절차,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

제57조 [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]

1.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.
2. 신원인수인은 센터에서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.
3.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, 신변, 인적 사항, 거주지 등의 대상자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즉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.
4.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
5.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퇴소 절차,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.

제58조 [계약 해제]

1.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,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(보호자)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,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하게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2. 센터는 대상자(보호자)가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,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센터장의 결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3. 대상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,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59조 [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]

1.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(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)에서 고시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2.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.
 -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 -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

우

-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
 - ④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.
3. 2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4.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.
-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
 -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(또는 보호자)안내하여야 한다.
 -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 - ④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(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,군,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)-입소,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- 서류확인-공단에 입력-서비스 이용